

[+] 긴급공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 큐넷홈페이지 | 화면크기 + -

Q-Net 소방안전교육사

통합검색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검색]

원서접수 | 합격자발표 | 확인서발급 | 자격정보 | 자료실 | 마이페이지 | 고객지원 | 전체메뉴

일반회원 |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 [로그인] | 확인번호에서 로그인

자격상세정보

자격명 : 소방안전교육사
 영문명 : Fire Safety Educator
 관련부처 : 국민안전처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상세정보	시험정보	기본정보	우대현황	훈련취업정보
시행공고	● 시험일정			
결격사유				
응시자격	○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

- 1)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소방안전관련학교(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또는 심리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② 소방안전관련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포함한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4호] 준용
 - ③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분야 상관없음), 소방설비기사(가스, 전기분야 상관없음),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
(소방기본법시행령 제7조의9)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 ※ 응시자격 사유심사 기준일은 월서접수 마감일임

[기타 참고사항]

-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로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학과를 말함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 공학과를 포함)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교육학, 심리학, 구급 및 응급처치론의 인정범위

(소방관련교과목? 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1. 교육학 : 교육학, 교육과정론, 안전교육학, 교육사회학, 교육인류학, 교육(측정)평가론, 교육학개론, 평생교육론, 교육심리학, 교육심리의 이해, 교수이론, 아동 및 성인교육방법론, 교육철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2. 심리학 : 심리학, 산업심리학, 안전심리학, 심리학개론, 기초심리학, 심리학입문,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뇌과학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3. 구급 및 응급처치론 : 구급 및 응급처치론, 구조구급실무, 기본간호학, 응급의학 총론, 응급처치론, 응급처치 총론, 일반응급처치학, 응급구조학개론, 기본응급처치학, 응급환자관리학 또는 응급환자관리학 실습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함.

○ 「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3의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결격사유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도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임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 소방학개론(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기기 등)·소방 시설물, 위험물 및 위험물 시설물 등)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규칙」 (소방방재청 예규 제7호 2012.1. 시행) [별표 1] 준용 2.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 환자 응급처치 등) 3. 재난관리론(재난의 정의 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등)	과목당 2문항 (총 75문항)	75분 (0930~1045)	객관식 4지택일형
제2차시험	1. 교육학원론 2. 심리학개론	과목당 3문항 (총 6문항)	120분 (1130~1330)	논술형 7문항(기하)
제3차시험	실기시험	1. 교육 초기 주의집중 능력(10점) 2. 교육 목표 접근성(10점) 3. 개인화된 학습지도(15점) 4. 전문지식의 깊이(25점) 5. 학습지(교과)의 상호작용(10점) 6. 사례설명의 적절성(10점) 7. 체계적 관성도와 준비성(20점)	면접위원 5명 수험자 2명에 대해 평가 진행	1인당 5분 내외 면접 및 실기 시험 방행
	면접시험	1.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적성 2.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교육관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장의력의 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면접위원 5명 수험자 2명에 대해 평가 진행	1인당 10분 내외

합격기준

 합격기준

구 분	합격 결정 기준
제1차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득점한 자
제2차시험	시험과목별 5인의 채점위원이 각각 채점하는 득립 5심제이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채점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득점한 자
제3차시험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면접시험은 해당 시험의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만을 결정

 면제 대상자

○ 시험의 일부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을 면제
- ※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 시행

등시수수료

 등시수수료(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7 제3항)

통합: 30,000원

취득방법

소방방재청장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1, 2, 3차 시험에 합격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면 자격을 취득

인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우)44558
Copyright © 1999-2015 All Rights Reserv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